

대전고등법원 2024. 6. 5 선고 2023나12829 판결 [물품대금 및 공사대금 청구의 소]

재판경과

대전고등법원 2024. 6. 5 선고 2023나12829 판결

대전지방법원 2023. 5. 25 선고 2021가합104065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이진안, 이현지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정훈, 김두진

변론종결 2024. 4. 17.

판결선고 2024. 6. 5.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23. 5. 25. 선고 2021가합104065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4,600,178,971원 및 그 중 13,108,357,849원에 대하여 2021. 6.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6.5%, 1,491,821,122원에 대하여 2020. 12. 1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항소심에서 추가·보충한 주장을 소송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7쪽 18행, 19행의 “Wh”를 “kWh”로 고친다.

7쪽 마지막 행 말미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원고는 당초 이 사건 각 시행법인에 관한 ESS 물품구매 계약에 따라 설치기준 총 93,636kWh 용량의 배터리를 264억 원에 공급하기로 하였으나 최종적으로 89,996kWh 용량의 배터리만을 공급하였으므로, 물품 대금도 그에 상응하는 25,373,728,053원[(264억 원 ÷ 93,636kWh) × 89,996kWh, 원 미만 버림]으로 감액되어야 한다.』

10쪽 13행의 “보이는 점”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④ 피고의 2019년, 2020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피고는 이 사건 각 사업시행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을 ESS 관련 대금을 피고의 매출로 인식하고 지급받았는데(갑25-1, 2), 이는 피고가 이 사건 각 사업시행법인에 대한 전체 공사의 수급인 또는 총괄 관리자로서 관련 대금을 피고의 매출로 인식하여 지급받은 후 이를 원고에게 도급인으로서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⑤ 피고에 대한 외부감사를 담당한 T회계법인은 2021. 3. 3.경 및 2022. 3. 10.경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미지급금”으로 2020. 12. 31. 기준 11,791,270,300원, 2021. 12. 31. 기준 6,147,850,000원[원고는 이 금액은 원고가 주장하는 원금만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서 지연손해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피고가 부당하게 공제한 약간의 금액(1억 원 가량)이 있다고 하고 있다(원고의 2022. 4. 20. 자 준비서면 20쪽 내지 22쪽 참조)]이 있음을 확인하여 달라는 채권채무조회서를 발송한 적이 있는 점(갑19-1, 2) ⑥ 원고와 피고는 변경공사도급계약서 체결 후에도 피고가 통정허위표시라고 주장하는 물품공급 및 설치공사 계약과 ESS 물품공급 및 ESS 설치공사 계약들이 유효함을 전제로 그 변경 합의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갑13)』

10쪽 마지막 행 말미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는 상행위의 대리인인 피고가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았더라도 상법 제48조에 따라 그 행위는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있으므로, 대리인인 피고에게는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물품공급 및 설치공사 계약을 이 사건 각 사업시행법인에게 귀속시키려는 대리의사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11쪽 16행 말미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는 원고가 배터리 설치기준 총 용량에 미달하는 용량의 배터리를 공급하였으므로, ESS 물품공급 계약에 따른 물품대금을 미달하는 용량만큼 감액하여야 한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와 피고는 ESS 물품구매 계약과 변경공사도급계약 등을 거치면서 원고가 공급 및 설치해야 할 배터리 설치 기준 용량 내지 Usable 용량을 감축하였고, 원고는 최종적으로 변경공사도급계약에서 정한 Usable 용량 85,665kWh를 넘는 86,316.56kWh의 Usable 용량 배터리를 공급하였다(갑2-1~12, 28-1~3, 을 2-1~12, 13-1~5, 14).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약정된 물품대금은 단순히 배터리 설치기준 용량만을 기준으로 산정된 것이 아니라 PCS 대금, ESS 설비 설치 용역대금 등도

포함되어 있고, 설치 기준 용량이 감소함에 따라 대금을 감액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피고의 주장과 같이 단순히 물품공급 및 설치계약의 대금 전체에서 배터리의 용량이 미달하는 비율만큼 대금의 감액을 인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판단된다.』

○ 15쪽 각주 2) 7행의 “(갑 제8호증의 10, 12).”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주식회사 D, E에 관한 ESS 설비 사용 전 검사가 2020. 6. 4. 완료되었으므로 그때부터 30일이 지난 2020. 7. 4. 그 용역대금 합계 1,089,000,000원(544,500,000원 × 2)의 이행기가 도래한다(갑8-2, 3).』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에서 인정한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그 한도 내에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서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신동현, 판사 이진영, 판사 이선미